



코로나 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

2022-09-01 | 윤명희

조회수 : 391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(제23조 관련)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.

< 해당 시험 >

1. 2022년 한국수자원공사 하반기 공채 필기시험
- 시험일시: 2022.9.3.(토), 10:00 ~ 12:00
2. 자원관리기술사 필기시험
- 시험일시: 2022.9.36.(토), 08:20 ~ 17:20
3.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·경력경쟁임용시험
- 시험일시 2022.8.31.(수), 10:00

- 대상자: 입원치료·자가치료·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·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
- 외출시간: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(이동시간 포함)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
- 외출시 주의사항
 - 이동방법: 도보, 자차(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), 방역택시 등(대중교통 이용 금지)
 - 주의사항: 마스크(KF94 또는 동급 이상) 상시 착용,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, 시험장소로 직행,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

※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

※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,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

목록 글쓰기